

# 초국적 ‘가족하기’ (doing family)의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실천\*

문현아<sup>\*\*</sup>, 은기수<sup>\*\*\*</sup>, 허오영숙<sup>\*\*\*\*</sup>

## | 목차 |

- |                                       |                                    |
|---------------------------------------|------------------------------------|
| 1. 문제제기                               | 재구성하는 초국적 가족                       |
| 2. 연구 배경 및 연구 방법                      | 4. 출입국 정책의 한계 속 초국적 ‘가족하기’의 실천과 의미 |
| 1) 결혼이주여성의 틈새적 위치                     | 1) ‘다문화가족’에 국한된                    |
| 2) 기존 연구 검토 및 초국적 가족 돌봄               | 체류정책의 한계와 초국적 가족의 돌봄 현실            |
| 3)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특징                  | 2) 새롭게 구성되는 돌보는 남성성의 단초            |
| 3. 결혼이주여성과 초국적 가족: 불연속성과 변화 가능성       | 3) 돌봄과 더불어 가족 너머와 공동체로 연결되는 ‘가족하기’ |
| 1) 한국인으로만 구성되지 않는 가족의 특징: 국적과 언어의 다양성 | 5. 맺으며                             |
| 2) 결혼, 이혼, 재혼을 통해 변화하고                |                                    |

## | 초록 |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내 ‘가족’을 이루는 중요한 일원이지만,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 이 글은 2023년 12월 16일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주최로 열린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 “인구 위기, 가족 위기 속 초국적 가족의 ‘가족하기’”를 논문 형식에 맞추어 수정한 것입니다.

\*\* 주저자: 서울대학교 mysyrius@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eunkisoo@snu.ac.kr

\*\*\*\* 공동저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sanjung3535@hanmail.net

맥락은 충분히 조망되지 않고 있다. 기존연구는 개인이 한국으로 이주해서 다문화가족이 되기 이전의 가족과 맺었던 원가족에 대한 관계나 다문화가족이 되면서 원가족과 한국의 가족이 어떻게 연결되고 새롭게 형성되어가는지를 초국적 가족관계 맺기로 접근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가족, 특히 이주여성들이 과거와 현재를 통해 형성하고 있는 '초국적' 가족이라는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와 가족의 연계망을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이주여성의 초국적 가족의 실천을 가족에 대한 동사형 개념을 통해 접근해, 변화하는 가족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주여성의 '가족하기'는 초국적 이주를 통해 어떤 특징을 지니며, 어떤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첫째, 이주여성의 가족이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초국적 가족의 실천을 제약하는 출입국 정책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는 이주여성의 실천을 강조하며 '가족하기'의 역동성을 분석한다. 덧붙여 가족에 국한되지 않는 돌봄의 현실을 포착해 이주여성들이 실천하는 가족 너머의 새로운 공동체적 가능성도 모색한다.

**주제어:** 돌봄, 이주, 국적, 초국적 가족,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 1. 문제제기

한국사회는 여러모로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사회에 국한되지 않은 전지구적 생태위기를 비롯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통한 인류 생존위기를 거쳐 경제위기가 현실로 닥치며 불안한 삶의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결혼을 못하거나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감소 위기가 더해지고 있다. 인구위기는 표면적으로는 출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키우기 힘들다'와 이런 사회를 '자식에게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인구안보의 위기로 불릴 정도로 내적으로 붕괴되는 한국사회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새로운 가족정책, 균형있는 돌봄경제에 대한 인식과 다인종 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은기수, 2022).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을 가늠하는 필수

적인 대전환에서 이주여성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국가기록원(2023) 아카이브에 정리되어 있는 한국 인구정책의 기초는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이다, 1990년대를 전후로 출산억제를 강조하던 가족계획정책이 종료되고 출산장려 지향의 저출산 정책이 등장한다. 이 시기와 맞물려 ‘가족 구성과 혈통 유지’를 명목으로 ‘연변처녀와 농촌 총각 짝짓기’ 정책이 시작된다(이화선, 2012). 이는 한국 여성에게 출산 ‘억제’를 강요했던 가족계획정책의 틀이 출산 ‘장려’로 방향만 바꾸었을 뿐,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을 국경을 넘어 이주여성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틀을 통해 1992년 한중수교, 통일교의 교세 확산을 배경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중요한 ‘매개’(이삼식 외, 2007)가 되어 ‘결혼이주여성’은 주요한 새로운 인구 집단으로 부상한다. 이 인구집단과 관련된 ‘국제결혼’ 건수는 1991년에 663건이었다가 1992년과 93년에 3천 건 정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1995년에는 1만 건을 넘어서기 시작한다(이삼식 외, 2007: 83).

뒤이어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려 함양군에서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가 제정되고(이선미, 2023), 유사한 조례가 인구감소를 겪는 지역 중심으로 확산된다. 다시 한번 이주여성을 인구 재생산을 위한 맥락에서 불러들여 이를 계기로 2002년까지 1만 건 정도의 국제결혼 건수가 2006년에 2만 9천 여 건까지 상승했다(e-나라지표, 2024). 이후 2012년까지 2만 건 내외를 유지하다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코로나시기 이전까지 1만 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한 결혼이주여성과 노동이주민 인구 등이 결합해 한국 내 체류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대략 5%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인구범주는 한국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변화하는데 중요한 한 축이 되었다. 그러나 이 인구범주는 인구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적극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의 측면에

서 제대로 '인구'로 포함되어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한 예로 유럽연합이나 OECD에서 이민자통합지표로 활용하는 자료는 내·외국인 통합조사다. 한국은 국적을 중심으로 외국인(이민자)통계만 내고 있어 국제 비교 가능한 이민자통합지표를 산출하기 어렵다(정기선·김혜진, 2015; 박시내, 2017). 결혼이주여성은 노동이주나 난민, 그리고 탈북(새터민) 등 한국사회에 다양한 이주와 관련된 범주의 인구집단과 연관되어 통합적으로 분석되지 않고, '다문화가족'이라는 범주로만 구분해 접근하고 있다. 인구감소 대책에서 이주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지만, 국경을 넘는 '이주'라는 변수를 사회통합과 관련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내 '가족'을 이루는 중요한 일원이지만,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맥락은 충분히 조망되지 않고 있다. 기존연구는 개인이 한국으로 이주해서 다문화가족이 되기 이전의 가족과 맺었던 원가족에 대한 관계나 다문화가족이 되면서 원가족과 한국의 가족이 어떻게 연결되고 새롭게 형성되어가는지를 초국적 가족관계 맺기로 접근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가족, 특히 이주여성들이 과거와 현재를 통해 형성하고 있는 '초국적' 가족이라는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와 가족의 연계망을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이주여성의 초국적 가족의 실천을 가족에 대한 동사형 개념을 통해 접근해, 변화하는 가족의 특징을 분석한다. 김순남은 가족구성권 논의 속에서 기존 가족질서와 불화하는 내용이 기존의 '가족 너머'를 상상하는 것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언급하며 "규범과 불화하는 트러블을 가시화하는 것"(김순남, 2022: 133)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는 가족연구에서 모건(Morgan)이 강조하는 '가족하기'(doing family)의 개념과 맞물린다. '가족하기'는 가족이 고정된 구조 또는 위치, 지위를 갖는다는 개념과 거리를 두고, 사소해 보이는 매일의 '실천'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개념이다(Morgan, 1996, 2011a, 2011b). 정해진 규범이나 이데올로기를 준수하는 맥락의 가족보다는 오히려 그 규범을 비켜서 일상에서 '하는' 가족실천(family practice)을 강조하는 개념

(Morgan, 1996, 2011b)이다. 모건은 이 ‘하기’가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족 단위로 가족에 부과되는 규범, 형식, 관계 맺기 등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하기’를 ‘가족’과 연결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Morgan, 2011a). 이처럼 ‘하기’를 통해 가족은 고정되고 움직이지 않는 일정한 상태로서가 아닌 생성되고 변화하며 진행중인 동시형 실천으로 접근된다(Kottman, 2021; Baldassar and Merla, 2014). 더 나아가 ‘하기’라는 실천을 통해 가족은 ‘해체’되지 않고 물질, 정서적 형식을 통해 자체의 리듬과 주기로 재구성되며 적응한다(Murray et al., 2019). 뒤에서 설명하지만, 해러웨이의 트러블과 함께 하기(해러웨이, 2021)라는 지향과 더불어 상호의존하는, 혈연가족을 넘어선 실천(김순남, 2022)을 강조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개념이다. 특히 ‘함께 사는’ 형식으로 가족을 전제하는 규범과 전형으로부터 ‘초국적 가족’은 비껴나 있지만, 오히려 떨어져 있으면서 가족성(familyhood)을 실천하는 중요한 주체로 고려된다(Bryceson and Vuorela, 2002: 3; Baldassar and Merla, 2014).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이라는 국민국가가 처한 인구위기, 그리고 이와 결합되어 맞물려 있는 돌봄위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경 넘기를 제안받은 존재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 결혼하여 ‘출산’을 통해 한국이라는 국민국가에 편입되도록 제안된 존재이기도 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그 과정에서 사실상 개인으로서만 국경을 넘도록 제안되었을 뿐, 이 개인이 자리한 가족이라는 구성이나 실천 관계는 한국의 사회통합 정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현실과 정책의 틈새에서 이주여성들은 어떻게 초국적 ‘가족하기’를 실천하고 있는가? 이들의 가족하기는 초국적 이주를 통해 어떤 특징을 지니며, 어떤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2장에서는 결혼을 매개로 이주했지만, 출입국 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의 간극 속에 비어있는, 혹은 틈새적 위치에 놓인 이주여성의 배경적 설명과 연구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3장에서는 결

혼이주여성이 국경을 넘어 만들고 있는 초국적 가족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가족하기'의 밑그림을 서술한다. 4장에서는 초국적 '가족하기'가 실천하는 맥락과 지향을 초국적 가족의 연계망과 특징으로 설명하며 가족 너머를 상상하는 '공동체' 지향의 측면도 분석한다.

## 2. 연구 배경 및 연구방법

### 1) 결혼이주여성의 틈새적 위치

앞에서 잠시 언급한 인구와 사회통합지표로 결혼이주여성의 틈새적 위치를 살펴보자. 결혼이주여성은 국경을 넘었다는 맥락에서 '이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해외출생인구로 유입국인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1세대다. 이민1세대로서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있고, 취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외국인인 유입국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 소지자로 결혼이주여성 중 귀화하지 않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만, 단기 체류자나 영주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또 다른 인구집단에도 해당된다. 이와 다르게 해외출생인구는 외국인과 귀화자를 포함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이 집단에도 해당된다. OECD에서 집계하는 국제이주통계에는 거주 이민자 규모를 외국인인구와 해외출생인구를 포함해 파악한다(정기선·김혜진, 2015). 한국에서는 외국인인구 통계만 발표하고, 해외출생인구 통계는 제공하지 않는다(정기선·김혜진, 2015). 한편, 이주민의 고용률, 경제활동률, 실업률 등은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조사를 통해 파악가능하지만, 이 조사에는 90일을 초과해 장기체류중인 '외국인', 즉 외국국적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귀화자는 포함하지 않아 해외출생인구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이주배경인구'(the population with a migrant

background)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해외출생인구(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국사회 인구파악의 기본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이른바 센서스에는 이주관련 문항이 ‘출생시 국적’, ‘현재 국적’, 이 둘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시점’을 조사한다(박효민, 2017). 이를 통해 부모의 해외출생여부는 파악할 수 없어 이민2세대를 포함하는 이주배경인구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정기선·김혜진, 2015). 이주배경인구에 대한 파악은 오히려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를 통해 파악 가능하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귀화한 한국국적자,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한국국적 자녀, 즉 국민이 포함되어 있어 이주배경인구 파악에는 적절하지만, 명칭은 ‘외국인주민’이다(정기선·이상지, 2016). 한국사회는 이주여성들을 어떻게 범주화해서 파악하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가?

이주여성들은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통계청의 ‘다문화인구동태’에서 별개의 인구집단으로 범주화되어 파악된다. 이 조사는 특정 유형의 이주민 집단과 가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내국인과의 비교나 해외출생인구 전체에 대한 통합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정기선·김혜진, 2015). 특히 ‘다문화인구동태’는 결혼, 출산, 이혼에 국한된 자료로 이들의 경제활동 등 다른 측면은 파악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이라는 범주 속에 가려 이주여성을 비롯한 이주민의 출신국 원가족에 대한 내용은 각종 다문화가족관련 조사에서 주요하게 고려된 적이 거의 없다(육수현·허정원, 2020: 83).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원가족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존재이기도 하다(허오영숙, 2013: 89).

이렇게 보면,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서 이주민의 위치가 어디에 자리하는지가 드러난다. 이종원·노용진(2013)에 따르면, 출입국가 통계에 관한 국제 기준의 대표인 UN 권고안과 OECD 기준은 모두 이주자를 상주국을 변경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상주 개념을 중시한다. UN 권

고안은 이주자를 장기 이주자와 단기 이주자로 구분하는데, 기준 거주기간은 1년이다. OECD 기준은 이주자를 영구적, 준영구적 이주자와 한시적 이주자로 구분한다. 이주여성은 결혼이라는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통계에는 '외국인'주민으로 호명되고, 외국인경제활동인구에는 포함되지 않는 틈새적 존재다.

이처럼 한국의 출입국 정책은 외국인의 '입국 억제'와 '유치 확대'의 조화라는 서로 모순되는 기조를 2003년까지 지속했다(김원숙, 2012). 지금도 큰 틀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사회통합적 틀은 여전히 미흡하다. 결혼을 위해 국경을 넘지만, 그래서 '귀화'도 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외국인'으로 범주화되거나 아니면 '다문화'가족으로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가족은 일방향으로 정착한 국가의 가족일 뿐, 초국적 가족으로서의 특성은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 2) 기존 연구 검토 및 초국적 가족 돌봄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주제로 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다양한 층위로 진행되어 기존 연구의 흐름을 하나의 축으로 망라하기 쉽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을 주제로 한 연구에 대한 '분야별', '주제별'로 정리한 연구동향이 최근 두드러진다. 한 예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이주여성과 '가족'을 키워드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논문에는 116편이 포함되어 있다(박정숙·이지현, 2018). 이에 따르면 심리사회적 문제를 다룬 논문이 53편으로 가장 많다. 2010년 이전까지 사회복지학, 교육학, 사회학 분야의 연구가 많았지만, 그 이후는 심리학, 아동복지 등 분야의 연구가 두드러진다(박정숙·이지현, 2018). 한편 '상답'에 초점을 맞춰 가족 분야의 341편 논문을 분석한 연구(송윤선·이미나, 2019)는 다문화 지원정책, 부부관계, 경제/취업 관련 주제가 중심이라고 밝혔다. 연구동향을 토대로 정리하면 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는 가족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상답을 주제로 한 연

구도 주요 부문이다. 그리고 이주여성의 주된 '상당' 주제는 가족관계 내에 국한되지 않고, '정책관련 취업 등 경제, 사회적 사안과 관련된다.

사회적 관계를 주로 다룬 논문(64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적응과 가족관계를 다룬 논문이 78.7%며 양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가 65%를 차지한다(최현우, 2023). 한편 질적연구 방법에 초점을 맞춘 논문(33편)을 분석한 연구는 이주여성의 학습 경험, 정체성, 결혼과 이혼 주제가 중심이 된다고 한다(김가연·홍송희, 2022). 정리하면, 이주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방면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개인적 차원, 특히 심리에 집중된 측면이 강하며, 가족관계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도 있지만, 대체로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다.

여성학 분야의 연구는 복지나 상담, 종교, 간호학 분야에 비해 논문 편수로 산정하면 소수 분야에 속한다. 그러나 여성학 분야의 연구들은 이주여성을 보다 적극적 주체로 호명하는 연구에 방점을 찍으며, 이주여성을 한국사회 내 적응이 필요한 존재라기 보다는, 중요한 사회통합의 행위자로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주여성의 국경을 넘는 경험을 중요하게 포착하여 문화접경지대로서의 가족과 이 여성들의 실천을 일종의 '문화전략'으로 해석해 시도한 연구(예, 김현미, 2010)는 기존 연구들과 다른 결을 보여준다. 특히 김현미(2010)의 연구는 '번역자'로서 이주여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포착해, 본 연구가 시도하는 '가족하기' 실천과 연결되는 초기 연구의 기반이 된다. 또한 이주여성의 어머니 역할을 초국적 가구의 특징과 연결한 연구(황정미, 2012)도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황정미(2012)의 연구는 다층적 모성에 대한 실태 파악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노동자이자 어머니인 이주여성의 특성을 강조해 노동과 가족의 측면을 아울러 포착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황정미(2012)의 연구는 실태조사보다는 기존자료를 이용한 간접적 분석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그런 한계를 극복하여 실제 인터뷰 사례를 통해 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이주여성들의 '초국적' 연결고리를 강조하는 맥락을 더해 분석을 진행한다.

초국적 특장의 강조는 결혼이주여성이 국경을 넘어 가족을 형성하는 측면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또한 초국적 특장의 강조는 이주여성의 일상이 한국 사회와 맞물려 있지만 동시에 떠나온 국가, 즉 소위 '원가족'과 연결된 존재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 분석이다. 특히 남편 쪽의 부계가족에 국한되지 않고 이주여성을 주축으로 하는 모계가족과 맺었었고 현재도 맺고 있는, 국경을 넘나들며 형성하는 '초국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의 실천에 주목한다.

'초국적' 개념은 국민국가 단위의 교류에 국한되는 국제적(international) 측면과 달리 개인, 개별 기관이나 조직 단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연결, 교환, 소통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Vertovec, 2009). 특히 "이주민들이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국경을 넘나들며 만드는 사회적 장"(Glick Schiller, 1999: 96)의 의미를 지닌다. 즉 초국적이라는 단어는 개인이나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나 협상, 관계맺기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초국적 가족'은 초국적 개인들이 가족을 단위로 해서 국경을 넘나들며 맺는 교류, 협상, 관계맺기를 일컫는데 적합하다. 마즈카토와 산스(Mazzucato and Schans, 2011)는 초국적 가족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배경으로 유입국의 정책을 문제로 꼽는다. 즉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유입국의 정책이 초국적 가족의 형성 배경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이주민 가족연구는 초국적 가족 개념을 많이 활용해 분석한다. 이를 반영하듯 마즈카토와 디토(Mazzucato and Dito, 2018)는 초국적 가족의 국가간 비교를 통해 남미, 아프리카, 동남 아시아 지역의 초국적 가족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평가하고 소개하는 연구도 진행했다.

물론 이 개념만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발다사르와 멀라(Baldassar and Merla, 2014)는 이주하는 존재들의 이동성(mobility)과 연결성(connectedness)을 고려한 기존의 주요 개념들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코헨(Cohen)의 디아스포라(diaspora), 아파두라이의 민족정경(ethnoscapes), 빠레나스나 혹셀드의 글로벌 돌봄사슬(global care chains) 등의 개념으로

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 개념들에 비해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순환성(circulation)’을 강조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초국적 가족 개념을 받아들인다(Baldassar and Merla, 2014: 37).

한국에서 이주여성과 관련해서 초국적 특징을 고려한 연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은 초국적 ‘가족’의 실천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초국적 존재라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 연구는 그와 연결된 시민권의 문제(황정미, 2011), 다른 연구는 경제적 교류나 한국이 아닌 곳과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김정선, 2010), 가족 실천의 측면은 부각하지 않았다.

이처럼 ‘초국적 가족’은 국경을 넘나드는 교류나 행위를 지칭하며 동시에 그 행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데 유용하다. 즉 ‘초국적 가족’ 개념을 통해 가족의 역동성(dynamism)이 국경을 넘나들며 어떻게 형성, 변화하는지 포착할 수 있다(Yeoh et al., 2020). 더불어 초국적 가족은 남편 중심의 한국 가족과의 연계에 국한하지 않고, 이주여성의 출신국에 남아있는 가족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한다. 즉 초국적 가족 개념을 통해 이주여성 원가족과의 관계가 포함된 통합적인 가족 ‘실천’이 파악될 수 있다.

### 3)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특징

이 연구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가 공동 기획진행한 <한국사회 이주여성의 원가족과 현가족 상황과 초국적 돌봄현황 조사>의 일환이다. 초국적 돌봄현황 조사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11월 사이의 기간 동안 서울, 경기, 제주 지역의 결혼이주여성 11명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모두 동의를 얻어 녹음한 뒤, 녹취록을 풀어 분석자료로 활용했다. 단, 마리아씨는 인터뷰 도중 너무 힘들다며 인터뷰를 포기해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다.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맥락 중, 특히 종교, 지인 소개, 중개업체 등 다양한 결혼 경로를 고려했다. 또한 기존의 피해자화된 서사를 극복할 이야

기를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 이를 테면 '직장'이 있거나 직업 경험에 있는 이주여성을 대상에 포함했다. 출신국가도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몽골로부터 이주한 여성들을 제외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본 사항은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출신국을 기재하는 경우, 개인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기본사항에서 표기하지 않았다.

<표 1> 연구참여자 및 가족관계 기본 사항

사례	이름	현재 직업	배우자 직업 현황	출생 연도	입국 연도	현 가족 현황
1	김순수	NGO 단체 운영	-	1965	2003	이혼, 자녀 3
2	박보람	자영업+임대업	공장 노동	1989	2009	재혼, 자녀 2
3	송정은	센터 아이돌보미	공사장 노동	1986	2010	기혼, 자녀 2
4	차난주	상담소 직원	공기업 노동	1984	2008	기혼, 자녀 2
5	이혜선	상담소 퇴직 후 구직 중	사무직 노동	1971	2003	기혼, 자녀 3
6	장사랑	자영업	공장 노동	1991	2010	재혼, 자녀 1
7	배소희	자영업	연금 없음	1986	2007	기혼, 자녀 2
8	하희수	파트 타임	사무직 노동	1994	2014	기혼
9	소냐	상담소 직원	연금 없음	1979	2000	기혼, 자녀 2
10	마리아	상담소 직원	-	1960	1993	이혼, 자녀 1
11	홍단비	다문화센터 통번역사	사무직 노동	1978	1997	기혼, 자녀 2

### 3. 결혼이주여성과 초국적 가족: 불연속성과 변화 가능성

#### 1) 한국인으로만 구성되지 않는 가족의 특징: 국적과 언어의 다양성

이주여성들이 국경을 넘어 형성하는 가족은 한국 국적인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배우자 관계로 시작해서 외국인이

던 여성은 한국 국적을 택해 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신국의 국적을 유지하며 한국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해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기는 경우, 그 자녀의 국적도 상황에 따라 한국 국적이 될 수도 있고, 무국적이거나 미등록이 될 수도 있다. 형식적으로 양계제가 허용되지만 한국의 시민권은 부계 중심으로 치우쳐 있는 시민권 체제로 해당 자녀가 출신국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는 기회는 많지 않지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중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기에 출신국 국적을 따르는 경우도 가능하다. 초국적 가족 내 구성원들의 국적은 이처럼 신청, 취득, 포기, 미등록, 등록 등의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쳐 구성, 재구성되는 유동적 특징을 띤다.

“2003년도에 제가 한국에 와 가지고, 2005년에 제가 국적을 취득하고 애를 초창해 와 가지고, 그때는 방학 때만 잠깐 왔다가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졸업, 고3때 실습을 그냥 한국에 와서 하는 것으로 선생님이 해줬어요.” (김순수)

김순수씨는 출신국에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지인의 소개로 (전) 남편을 소개 받아 한국으로 이주했다. 한국에 와서 결혼관계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뒤에야 출신국에 있던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고, 자녀는 귀화신청을 하고 시험을 본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다.

“난 [...] 아이랑 같이 올 거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저는 결혼비자 받았는데, 애기 큰 애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왔어요. 다시 [신청했는데, 또 안나와, 그래서 왜? 무슨 이유냐고 하니까, 입양해야 된대. 그래야 이 애기를 키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애기가 우리가 같이 산지 9개월 후에 딱 [3개월씩] 세 번 [연장해서] 왔어요. 한 번에 3개월 비지만 주고, 또 [신청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입양해야 된다고 그때 [알려줘서] 그때야 다시 [신청해서, 9개월 때 애기가] 왔지.’ (이혜선)

이혜선씨도 출신국에 거주할 때 자녀가 있었고, 자녀를 남겨두고 한국

으로 입국했다. 출신국으로 사업차 방문한 남편과 연애를 이어가다 결혼하기로 해서 한국으로 입국해 결혼하고 국적을 취득했다. 김순수씨와 마찬가지로 국적을 취득한 이후 남겨둔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했으나, '입양' 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서 9개월에 걸쳐 서류를 마련하고 수속을 밟고 나서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국경을 넘는다는 이유로 이혜선씨는 본인의 자녀를 '입양' 절차를 통해 데려와야 했다.

“바로 자격증 바로 따자마자 신청했거든요. 저는 기다리는 게 한 일 년 넘었어요. 제가 애기도 없고 한국에 온 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따지나 봐요. 애기있는 사람들 보다는 더 느린 것 같아요”(하희수)

“국적을 신청하고 이제, 인터뷰는 한 8개월, 둘째 8개월 때 면접을 받았어요. 제가 임신해서 면접 인터뷰를 해서 그런지 바로 통과된 거였어요. 그것도 국적도 되게 쉽게 된 거예요”(차난주)

하희수씨와 차난주씨의 사례를 보면, '아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두고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와 무관하게 한국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순간부터 시민권에 접근할 자격이 생겨야 함에도 이주 여성들은 '자녀'의 유무를 통해 영향을 받는 틀에 놓인다. 이민1세대로서 여성의 존재보다 오히려 '출산'을 통해 '인구'에 포함되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초국적 가족은 이처럼 다국적 가족 구성원을 전제로 한다. 다국적 단계는 각 국가별 이주정책이나 비자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국적 단계는 체류자격에 따라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족하기가 실천됨을 알려준다.

“엄마는 [...] 1994년에 쿠웨이트, 거기 아이돌보미로 일하러 갔어요. 거기서 2년 마다 집에 오고, 또 다시 가고. 한, 한 달 동안만 집에 살다가 다른 나라, 또 쿠웨이트로 다시 가고, 한 10년? 한 10년 정도. 2014년에 그만두고 우리를 돌봐줬죠.

저하고 동생들이랑. [...] 할머니, 할아버지 손으로 [웃음 키웠어요.” (송정은)

“언니는 지금 홍콩에 가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어요.” (차난주)

“남편이 일본어 아니까, [...] 그래서 일본어랑 [웃음 한국어랑 좀 통역하듯이 이야기 나눴어요. [...] [남편이] 옛날에 한 6개월인가, 일본에서 일했대요. 친척들이 거기 있으니까, 삼촌들이랑. [...] 서울에 있는 시누랑, 부산에 있는 시누랑, 일본에 있는 시누 두 명. 다 착해요. 저랑 잘 맞아요. [웃음” (송정은)

초국적 가족의 형성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이주여성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지만, 이주여성이 가족 내에서 처음 국경을 넘은 유일한 사람만은 아니다. 송정은씨의 경우 어머니가 쿠웨이트에 가사노동자로 이주해 가족 내에서 이미 국경을 넘는 경험을 했고, 송정은씨는 이미 초국적 가족의 자녀로 자라온 배경이 있다. 차난주씨의 경우는 차난주씨가 한국으로 떠나던 즈음에 언니도 홍콩으로 떠났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한 가족 내에서 초국적 가족의 계기가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여성의 가족들만 초국적 가족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송정은씨의 경우에는 남편의 가족도 초국적 가족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초국적 가족의 경험은 서로 다른 국적에 국한되지 않고, 사용하는 언어에서의 다양성과 중층성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연구진: 그럼 집에서는 [둘째, 셋째 아이와는 한국어로 이야기하시고 [첫째와 어머니하고는 모국어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순수**: 뭐 한국어 모국어 섞어서, [...] 그냥 다 섞어서 이야기해요.

연구진: 막내는 근데 모국어를 [전혀 모르잖아요?]

**김순수**: 우리가 모국어로 이야기하면 “모국어 하지마!” [라고 해요] [일동 웃음. 근데 우리가 모국어로 하는 거 듣고 애가 유튜브에서 가족의 호칭은 다 그 언어를 배웠어요. 어느 순간, 아 엄마, 아빠, 봐라! 할머니도 친할머니 아니, 외할머니니까 외할머니, 그 호칭도 다 배웠더라고요. (김순수) [출신국 언어에 대한 표현을 ‘모국어’로 수정했다

한국에서 소위 다문화가족 내에서는 '한국어' 중심의 소통방식이 기준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한 가족 내에서 하나의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는 인간이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다. 가족 모두가 '한국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 규범이 아니라 그 반대일 수 있다. 그러나 다중 언어의 소통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한국형 '다문화' 정책에서 이주여성은 유입국의 언어를 배우는 방식에 따르도록 종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규범을 벗어나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 경우, 다양한 맥락에서 자녀가 출생하여 성장하는 경우, 원가족 부모를 초청해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초국적 가족의 경우 등은 다국적으로 구성원이 존재하며, 현실에서 '가족하기'도 다언어 소통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자녀 세대나 초국적 가족의 결합을 고려하면, 한국어 중심이 아닌 이들이 특색적으로 만들어가는 또다른 방식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가족은 단일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범주도, 단일한 국적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범주도 아니다.

## 2) 결혼, 이혼, 재혼을 통해 변화하고 재구성하는 초국적 가족

“저도 지금 가족이 있으니까, 새로운 딸이 생겼으니까. 저는 가족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제 꿈이었어요. 뭐 남편, 아내, 딸, 아님 자식. 그렇게 처음 봤을 때 결혼부터 좀 그쪽으로, 그냥 애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다가 안 되니까. 그래도 [...] 남편이랑 사이 안 좋게 헤어진 거 아니고 서로 결국에는 사이 좋게 헤어졌어요. 제가 애 낳고 싶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지금 애 낳고 살고 있어요, 애가 있으니까.” (장사랑)

부부간 나이 차이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결론짓기 어렵지만 장사랑씨의 경우에는 남편의 나이가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아 임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아이를 원했으나 생기지 않았고, 헤어진 뒤에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바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중개업을 통해 결혼을 하는 경우, 한국인 남편과 이주여성인 부인과의 나이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국내인 사이의 결혼에서 남성이 아내보다 10세 이상 연상인 경우는 3.4%에 인데 비해,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에서는 34.2%로 비율이 10배 이상으로 높아진다(통계청, 2023b).

인구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에서 결혼이주여성과의 결혼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서 ‘결혼’은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출산 이후와 양육까지 적극 지원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결혼보조금에 대해 분석한 연구(박지현, 2020)에 따르면, 결혼보조금은 정착, 결혼,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국제결혼에 관한 비용지원’ 내용만을 담고 있다. 바꾸어 생각하면, 만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고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결혼이주여성 가족 내 출산율이 내국인 가족에 비해 높게 나타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유삼현(2017)은 국내 이주여성들의 출산력 수준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며, 선행연구들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는 배경에는 ‘이주민 아내’, ‘혼인이주자 가족 부부’, ‘외국인 아내’ 등 서로 다른 범주의 인구집단을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서술한다. 통계청(2023a) 자료를 보면 다문화 자녀 출생(12,526명)은 전체 출생 비중의 5.0%인데, 전년 대비 0.5%p 감소했다. 덧붙여 2022년 전체 출생이 24만 9천명으로 국내출생이 전년보다 4.4%p 감소한 데 비해 다문화 부모의 출생은 12.5%p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더 크다. 출생아 추이를 보더라도 2012년 22,908명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절반에 가깝게 감소하는 추이가 뚜렷하다. 해외출생여성과 국내출생여성으로 범주를 구분해 비교한 출산력 연구도 해외출생여성의 출산력이 더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한다(유삼현, 2017).

박보람씨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남편이 용돈을 주지 않아 자녀를 위해 뭐라도 사주고 싶어서 부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부업’이 빌미가 되어 박보람씨는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는다며 이혼 소송을 당

한다. 소송장을 받고 싸우던 중에 그 소리를 듣던 옆집 아주머니가 경찰에 신고해 쉼터로 연계되었다. 쉼터에서 나온 뒤 이혼을 했고, 지금은 아이를 2주에 한 번만 면접권을 얻어 만나고 있다. 이혼을 '당하는' 처지여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어 포기했다. 이로 인해 결혼이민비자(F-6)를 통한 귀화에 해당하지 않아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국적을 신청했다. 2013년에 이혼하고 2017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인터뷰 당시까지 아이 양육권을 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박보람씨의 경우 시어머니가 이혼소송을 강력하게 원했던 특이한 배경으로 인해 자녀가 있음에도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없었고, 양육권을 찾기 위한 지난한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과 재판을 통해 자녀의 양육권과 본인의 체류자격을 지켜내야 하는 이주여성의 생애는 국내 여성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궤적으로 '가족하기'를 실천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으로부터 이탈해 새롭게 초국적 가족을 만들어가는 방향이 진행되고 있다. 박보람씨는 소송과 재판을 겪는 동안의 어려움 속에 모국어로 위로를 해주던 남성을 만나 다시 새롭게 가족을 형성했다,

#### 4. 출입국 정책의 한계 속 초국적 '가족하기'의 실천과 의미

##### 1) '다문화가족'에 국한된 체류정책의 한계와 초국적 가족의 돌봄 현실

“저는 귀화했는데, 일반귀화했기 때문에 친정 엄마 올 때 삼 개월씩만 비자 줘요. 간이귀화할 때, 한국사람과 살면서 혼인해서 귀화한 경우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친정 엄마는 국적, 제가 일반귀화로 혼자 받았기 때문에 3개월 방문 비자 이외에 안 줘요.” (박보람)

박보람씨는 자녀를 낳았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남편은 자녀를 돌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보람씨를 문제삼으며, 이혼을 종용했다. 국가는 이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고, ‘낳은 아이를 책임지고 자 하는 권리’도 박보람씨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박보람씨가 재구성한 초국적 가족은 귀화 한국인 여성인 박보람씨와 동일한 출신국 배경을 가진 외국인 남성이 형성한 가족이다. 그리고 이 가족에서 새롭게 자녀가 태어났다. ‘다문화가족’의 법적 정의는 부부 중 한쪽이 반드시 한국인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귀화 한국인도 포함된다. 자녀 양육 돌봄은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을 초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외국인 배우자를 여성으로 가정하고 양육돌봄과 체류를 연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보람씨는 ‘귀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의 외국인 남편의 부모를 자녀양육 목적으로 장기 초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박보람씨는 ‘귀화한 한국인’이기에 돌봄을 목적으로 출신국 원가족을 초청하여 장기체류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박보람씨가 이주배경을 가진 귀화인이고, 양육 돌봄을 위해 출신국 친정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는다. 때문에 박보람씨는 자신의 부모를 3개월 미만으로만 초청 가능한 것이다. 박보람씨가 양육 돌봄의 목적으로 외국인 남편의 가족을 초청했다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방문 동거비자(F-1-5)로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박보람씨는 귀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친정 가족을 양육돌봄을 위한 목적으로 초청할 수 없다. 이는 돌봄에 대한 귀화(한국인)에 대한 역설적인 차별이다. 한국인 중에서도 해외에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초청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귀화한 한국인은 특히 한국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초청할 수 없다. 귀화 한국인이 행정자치부 통계에 ‘외국인주민’으로 여전히 집계되는 배경일 것이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친정 부모님을 모셔와서 돌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엄마, 부모님들 여기 사는 거 지금 만 7세까지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거 조금만 더, 만 7세는 아직 어린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바뀌면은 저는 좋겠어요. 나 뿐만,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이주여성 가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송정은)

박보람씨의 경우와 달리 송정은씨는 다문화지원정책의 틀에 포함되어 두 자녀를 돌보는데 출신국에 계신 어머니를 초청해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경우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자녀의 나이가 현재는 9세로 확대되었지만, 인터뷰 당시에는 7세로 제한되어 있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조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정책 기조 때문이다. 박보람씨 경우처럼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례가 없지 않는데, 그때 돌봐줄 유일한 지원책은 출신국에 계신 부모님일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초등돌봄의 공백으로 인해 직장을 다니던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이 빈번하게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주여성의 '가족하기'는 그같은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송정은씨의 경우에는 정부가 연령제한을 걸어 돌봄에 제약을 가하고, 귀화 한국인 박보람씨의 경우에는 귀화인에 대한 차별로 제한을 걸어 초국적 가족 돌봄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아이들 대부분 제가 혼자 다 했고 예 그때는, [...] 시어머니는 그때 일했어요. 밭에세 일했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도와주는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 누가 옆에 있는 사람도 없고, 예, 참 많이 힘들었어요.” (송정은)

송정은씨는 시어머니도 일하느라 바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송정은씨가 바라던 기대는 인터뷰가 마무리된 이후, 이주여성 당사자들과 관련 이주인권단체들이 개선 방안을 요구하면서 2021년 에야 만 9세까지 연장되었고, ‘한부모 결혼이주가정’과 ‘다자녀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 만 12세까지 초청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국내 가족의 경우에 조부모 돌봄에서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삼아 돌봄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경우를 상상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초국적 가족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다.

## 2) 새롭게 구성되는 돌보는 남성성의 단초

한국사회 내에서도 비교적 최근에서야 남성의 가족과의 연계, 특히 돌봄에의 참여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하고 있다. 연구진은 뜻밖의 표현과 더불어 이주여성의 가족하기에서 중요한 남성 ‘배우자’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돌보는 남성성의 사례를 만났다. 차난주씨는 남편을 만나 “저는 로또 맞은 것 같”다고 하며, 시어머니도 “우리 아들은 너를 만나서 로또 맞은 것 같아”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로또맞은 사연은 다음과 같다.

“신랑은 아이를 돌봐주는 것에 대해 많이 도와줬어요. 뭐, 그 갓난애기를 매일 샤워해주잖아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항상 남편 기다리고 샤워, 같이 목욕시키고 [그랬죠.] 그래서 남편이 회식 있을 때 나 오늘 ‘애기 목욕해야 돼서 못 간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한국인들이 ‘아이 낳으면 우울증 생긴다’ 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좋아서 우울증,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었어요. 뭐 행복했어요. [웃음] 남편이 빨래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요. 요리 하려고 음식할 때도 제가 남편 퇴근하기 전에 제가 하긴 하지만, 뭐 국수 이런 거는, 남편이 국수를 좋아해요. 국수 먹는 날은 항상 남편이 준비해요. 뭐 삼겹살 먹을 때는 항상 남편이 고기를 구워줘요, 나는 채소만 준비하면 돼요.” (차난주)

연구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몇 안되는 사례 중에서 남편이 돌봄에 적극 지원, 가담하는 경우와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경우로 양분되어 있었다. 남성 배우자의 돌봄 공백의 지점이 강조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남편이 돌봄을 함께 하는 경우와 더불어 대체로 남편의 가족, 특히 시어머니의 도움이 적극적인 경우(홍단비)도 있었다. 남편이 돕는 경우, 이혼한 남편은 대체로 전혀 돕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고, 재혼한 남편은 상대적으로 적극 협조하거나 자녀 양육을 본인보다 더 잘 맡아서 한다(차난주·배소희·박보람)고 평가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의향을 살펴본 연구(김필숙·이윤석·김두섭, 2018)에 따르면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 많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의향이 높다고 분석했는데 기존의 이런 연구경향에 부합하는 현실이 밝혀진 셈이다.

돌보는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서 돌봄을 여성성의 측면으로 남겨두는 경향과 맞물린 젠더구분을 뒤흔드는 변화와 맞물려 있다(문현아, 2021). 기존의 이주여성에 관한 논의 속에서 이주여성의 배우자 남성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측면, 특히 폭력이 강조된 현실과 맞물려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의 사례를 통해 보면 이주여성이 형성하는 초국적 가족의 특징에서 배우자 남성들도 한국적인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규범에 충실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이 논의를 더욱 확장하고 관련 사례를 추가하는 분석이 이어지면 이주여성의 '가족하기'에서 배우자 변수를 고려한 새로운 접근들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3) 돌봄과 더불어 가족 너머와 공동체로 연결되는 '가족하기'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정부의 이주여성에 대한 인구정책의 현실은 '결혼'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었고, 그것도 지극히 젠더불평등한 방식을 전제한 것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도 여성들은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며 이민2세대를 길러내고 있다. 이들 모두가 "힘들었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 주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가족을 형성하고 직장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며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아이들은 어떻게 잘 자랐을까?

“아버님도 와서 애도 좀 보고 싶다고. 특히 기쁨.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놀러가요 집에. 아니면 어버이날에 용돈 보내주고. 설날 추석 때 제가 몰래 남편, [웃음] 현재 남편은 잘 몰라요. 제가 몰래. 어쨌든 사는, 같이 사는 동안 좋은 사이였고, 나쁘게 헤어지는 거 아니고. 그래도 서로 내가 원하는 일도 이해해주고. 저는 남편에 대해 좀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아버님도 서로 우리가 친척처럼 지내자고, 가족 있어도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라고.”(장사랑)

“일을 하고 싶지만, [...] 정식직원으로 주5일 근무로 한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 애가 돌 지나고 너무 어리니까. 팀장님한테 ‘애 볼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팀장님이 그러면 ‘3일 정도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하다가 안 되면 그만뒀도 된다’고 해서 시작했고,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계속 하다가 이렇게 8년까지 [웃음]”(배소희)

장사랑씨는 이혼한 뒤에 전 가족의 시아버지와 계속 연락을 하며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친정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한 경험으로 아버지와 친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장사랑씨에게 시아버지는 오히려 ‘아버지’로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관계로 맺어진 것 같았다. 앞에서 언급한 ‘트러블’이 새롭게 혈연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관계의 확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배소희씨의 경우는 팀장님과 동료들의 지원 덕분에 아이들을 키우는 어려움을 덜어내는데 도움을 받았다. 8년이 지나고 나서 자영업을 시작하던 때에는 매장 주변의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오며 가며 아이들을 돌봐주고 지원하는데 동참했다고 한다.

분량의 한계상 모두 소개하기 어렵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이주여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한 가족 아닌 지역사회나 주변 사람의 지원은 이주여성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종종 언급되었다. 김순수씨는 동사무소 직원이 퇴근한 뒤에 별도의 시간을 내어 자녀의 ‘치료’를 도왔고, 동네 할머니가 노래를 통해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제안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보람씨도 같은 아파트에 살던 동일 출신국 친구들의 지지와 협조를 강조했다, 심지어 쉼터 연계도 경찰을 통해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의 사례와 장사랑, 배소희씨의 사례처럼 이주여성들의 가족하기는 혈연 중심의 가족 내로 국한되지 않고, 가족 너머와 연결되며 새로운 관계맺기의 실천과 맞물려 있다.

## 5. 맺으며

배소희씨는 “공동체 활동도, 센터에서 사람들 도와주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요, 솔직히, 저, 인정해요, 저 많이 변했어요.”라고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시절의 본인과 지금의 본인은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건이 가족하기를 제안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공동체와의 연계였다(Morgan, 1996). 배소희씨를 비롯해 이 연구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가족 내 어머니이자 배우자 여성으로서의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병행하며 개인의 삶을 영위하며 실천하는 주체들이다. 이 연구는 이주여성들이 개인으로서나 가족과 더불어 존재함과 동시에 공동체와도 연관된 존재라는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라는 형식상의 공동체가 체류자격이나 출입국 정책을 통해 공동체로서의 통합에 제약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주여성들의 일상의 실천은 대안적 공동체와의 연계를 더 중시하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공동체는 혈연 중심의 관계 안팎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출신국 지인들로 구성된 이주민공동체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경제, 사회활동을 통해 직장이나 시민단체와 연계된 공동체인 경우도 있다. 이주여성을 둘러싼 이러한 상황은 기존 연구에서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측면이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초국적 가족의 특징을 통해 주체적으로 가족하기를 실천하는 바의 의미를 포착하고자 했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는 첫째, 이주여성의 가족이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이 연구는 초국적 가족의 실천을 제약하는 출입국 정책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는 이주여성의 실천을 강조하며 가족하기의 역동성을 분석했다. 덧붙여 가족에 국한되지 않는 확장된 돌봄의 영역도 포착해 이주여성들이 실천하는 가족 너머의 새로운 공동체적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주여성들의 원가족 상황은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이는 이 연구가 한국사회의 출입국 정책이 초국적 가족 실천을 제약하는 측

면과 그에 맞서는 초국적 가족의 특징을 강조하는데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짧게만 덧붙이면 이주여성과 원가족의 관계는 참여자들 사이에 상당히 다양했다. 그 중에는 정상성이라는 규범과 불화하는, 앞에서 언급한 소위 '트러블'로 독해 가능한 원가족 관계도 없지 않았다. 그 트러블은 여성들에게 '이주'를 통한 새로운 가족형성의 주요한 계기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 '가족하기' 개념에서 강조하는 변화하는 가족을 해체가 아닌 자체의 리듬과 주기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과 맞닿는다. 원가족과의 초국적 관계망 형성에서 드러난 주요한 공통점은 '가족하기'에서 장벽이자 한계를 만드는 한국의 출입국 정책과 체류 제도였다. 이로 인해 원가족과 원할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상황은 거의 모든 결혼이주여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초국적 가족은 국경을 넘는 이주민을 한국사회 위기를 대처할 고안책으로 고려하면서 등장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초국적 가족을 실천하는 이주여성을, 함께 위기를 극복할 공동체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위기가 아니어도 여성의 삶은 가부장의 틀이 존속하는 한 여전히 힘겨운 투쟁의 현장이다. 페미니즘은 그런 맥락에서 힘겨운 일상의 경계들을 통과하며 경계들과 더불어 경계들을 극복하는 해방의 잠재력을 지닌 주체와 연대를 강조한다(모한티, 2005). 정부의 차별적 정책과 인권침해적인 다양한 조례 속에서 이주여성들은 이 소멸하려는 땅에 새롭게 정착해 초국적 가족을 실천하며 틈새 속에서 해방의 잠재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사회는 무엇보다 초국적 가족이 무엇이며 그 실태가 어떠한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사회는 과거에 이주, 특히 노동이주 송출국이었고, 해외동포를 주요한 정책으로 고려하는 국가다. 그런 국가에서 초국적 가족의 특징은 이주여성에 국한된 특징이 아니라 이주와 더불어 지속될 미래지향의 가족 형태다. 더불어 '가족하기'는 가족 너머를 상상하도록 동사형으로 그려내는 중요한 실천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가 소개하는 이주여성들의 초국적 '가족하기'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을 위해 성찰의 중요한 계기로 해석되길 희망한다.

## | 참고문헌 |

### (1) 국내문헌

- 김가연·홍송희. 2022.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관련 질적 연구 동향 분석.” 『인문사회21』 13(5): 57-70.
- 김순남. 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파주: 오월의 봄.
- 김원숙. 2012.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이민정책연구원 위킹페이퍼 시리즈』 NO. 2012-04.
- 김정선. 2010. “아래로부터의 초국적 귀속의 정치학: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2): 1-39.
- 김필숙·이윤석·김두섭. 2018. “결혼이주여성의 남편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그리고 출산 의향: 초혼 및 재혼 차이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9(1): 61-95.
- 김현미. 2010. “결혼 이주여성의 가정(Home) 만들기:문화 접경시대 번역자로서의 이주여성.” 『비교한국학』 18(3): 145-174.
- 모한티, 찬드라 탈파드. 2005. 『경계없는 페미니즘』. 문현아(역). 서울: 여이연.
- 문현아. 2021. “돌보는 남성성의 가능성 모색: 남성의 가족돌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7(3): 33-63.
- 박시내. 2017. “이민자 체류상태 및 고용조사 개발.” 『통계연구』 22(1): 1-26.
- 박정숙·이지현. 2018. “결혼이주여성 가족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전인간호과학술지』 11: 1-9.
- 박지현. 2020. “결혼보조금이 결혼에 미친 영향: 2004-2019 한국의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43(2): 1-39.
- 박효민. 2021. 『각국 센서스의 이주문항의 현황 및 한국 센서스에서의 시사점』.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1-14. 고양: IOM 이민정책연구원.
- 송윤선·이미나. 2019.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당 관련 KCI연구 동향.”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9(4): 697-706.
- 유삼현. 2017. “이주여성의 출산력 수준: 얽힌 실타래 풀기.” 『한국인구학』 40(1): 29-55.
- 육수현·허정원. 2020. “본국가족초청제도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질에 미치는 영향: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0(3): 81-129.
- 이삼식·박중서·김필숙·김형석.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책 방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선미. 2023. “국제결혼 지원조례, 이주여성의 시각으로 뜯어보기.” 성·인종차별적  
조례폐지 TF,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의 시민주체성 강화를 위한  
성·인종차별적 조례폐지 촉구 토론회』 자료집(2023.12.11.).
- 이종원·노용진. 2013. 『출입국자통계 품질개선 건설링 최종결과보고서: 국제비교성  
제고』. 통계청.
- 이화선. 2012.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권에 관한 고찰: 인권시각에서의 재생산권 범리의  
이해.” 『미국헌법연구』 23(1): 205-234.
- 정기선·김혜진. 2015. 『이주민통계 국제비교 현황과 시사점』. 이민정책연구원 통계  
브리프 시리즈, No. 2015001. 고양: IOM 이민정책연구원.
- 정기선·이상지. 2016. 『국내 외국인 이민 관련 행정통계 이해를 위한 소고』. 이민정  
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16-04. 고양: IOM 이민정책연구원.
- 최현우. 202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관련 연구 동향.” 『다문화사회연구』  
16(2): 201-221.
- 해러웨이, 도나. 2021. 『트러블과 함께 하기』. 최유미(역). 서울: 마농지.
- 허오영숙. 2013.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가족 지원』. 서울: 한울아카데미.
- 황정미. 2011. “초국적 이주와 여성의 시민권에 관한 새로운 쟁점들.” 『한국여성학』  
27(4): 111-143.
- \_\_\_\_\_. 2012. “다문화 사회와 ‘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 모성 담론의 재구성과  
어머니의 시민권에 관한 고찰.” 『아시아여성연구』 51(2): 103-143.

## (2) 국외문헌

- Baldassar, Loretta and Laura Merla, 2014. *Transnational Families, Migration and the  
Circulation of Care: Understanding Mobility and Absence in Family Life*. New  
York: Routledge.
- Bryceson, Deborah and Ulla Vuorela, 2002. *The Transnational Family: New European  
Frontiers and Global Networks*. Oxford: Berg.
- Glick Schiller, Nina, 1999. “Transmigrants and Nation-States: Something Old and  
Something New in the U.S. Immigrant Experience.” Hirschman, Charles, Philip  
Kasinitz, and Josh DeWind(eds.)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American Experienc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94-119.
- Kottman, Nora, 2021. “Doing Family on a Global Stage: German Expatriates in southern  
Tokyo.” *Recherches Sociologiques et Anthropologiques* 52(1): 149-169.

## 62 초국적 '가족하기'(doing family)의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실천

- Mazzucato, Valentina and Bilisuma B. Dito. 2018. "Transnational Families: Cross-country Comparative Perspectives." *Population, Space and Place* 2018; 24:e2165. <https://doi.org/10.1002/psp.2165>
- Mazzucato, Valentina and Djamilla Schans. 2011. "Transnational Families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4): 704-712.
- Morgan, David H.J., 1996. *Family Connections: An Introduction to Family Studies*.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2011a. "Locating 'Family Practices.'"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16(4): 14
- \_\_\_\_\_. 2011b. *Rethinking Family Practices*.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Murray, Lesley, Liz McDonnell, Tamsin Hinton-Smith, Nuno Ferrira and Katie Walsh. 2019. *Families in Motion: Ebbing and Flowing through Space and Time*. Bingley: Emerald Publishing Ltd.
- Vertovec, Steven. 2009. *Transnationalism*. New York: Routledge.
- Yeoh, Brenda S.Y., Bittindra Chand Somaiah, Theodora Lam and Kristel F. Acedera. 2020. "Doing Family in "Times of Migration": Care Temporalities and Gender Politics in Southeast Asia."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110(6): 1709-1725.

### (3) 기사 및 인터넷 자료

- 국가기록원. 2023. <https://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view/Policy.do> [검색일: 2023.12.13.]
- 은기수. 2022. "인구안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동아일보>. 2022.4.9.
- 통계청. 2023a.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통계청. 2023b. <2022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 통계청. 2024.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1&vw\\_cd=MT\\_ZTITLE&list\\_id=A23\\_4&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1&vw_cd=MT_ZTITLE&list_id=A23_4&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검색일: 2024.2.3.]
- e-나라지표. 2024. 국가별 국제결혼 건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 [검색일: 2024.2.29.]

Abstract

## Marriage Migrant Women's 'Doing Family' Practices as the Subjects of Transnational Families

Moon, Hyun-A  
(Seoul National University)

Eun, Ki-Soo  
(Seoul National University)

Heo, Young-Sook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Marriage migrant women are regarded as integral members of Korean 'families'. However, existing research insufficiently emphasizes the transnational family relationships of marriage migrants with their families of origin prior to immigrating to Korea, as well as how these relationships are maintained and transformed after becoming a part of a multicultural family.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nterconnection between immigration and family by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 of 'doing family' that migrant women, especially those who form 'transnational' families, are practicing through their past and present experiences. To achieve this, the paper analyzes the changing features of families by approaching the practices of migrant women's transnational families through the concept of 'doing family.'

Based on the awareness of how their practices of 'doing family' through transnational migration can be characterized and what possibilities they may lead to, this paper first emphasizes that marriage

migrant women's families possess transnational characteristics that transcend borders. Secondly, it highlights the limitations of South Korean migration policies that constrain the practices of transnational families and emphasizes the practice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overcoming these limitations, analyzing the dynamism of 'doing family.' Lastly it captures the reality of care that extends beyond the family, exploring new communal possibilities beyond the family that marriage migrant women are practicing.

**Key words:** Care, Migration, Nationality, Transnational Family, Multiculturalism, Marriage Migrant Women

- ▮ 투 고 일 : 2024년 3월 17일
- ▮ 최초심사일 : 2024년 4월 8일
- ▮ 게재확정일 : 2024년 4월 22일